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
----------	----

제출년월일 : 199 . . .
제출자 : 영주시장

1. 개정이유

영주시규제개혁추진지침에 의거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폐수 및 생활오수의 배출시 의무 신고 사항 기간을 7일전에서 5일전으로 조정함. (안 제11조)
- 나.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기간을 20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 (안 제15조)
- 다. 증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에서 1천분의 12로 하고, 증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25조 제2항)
- 라. 부담금 체납처분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던 것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함. (안 제27조)
- 마. 폐수종말처리장 사용 제한시 입주업체의 사전 대비를 위하여 예고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조정함. (안 제30조 제2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조구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 관련법령(발췌) 1부.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배수 7일전”을 “배수 5일전”으로 한다.

제15조 중 “20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100분의 2”를 “1천분의 12”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30조 중 “30일이상”을 “60일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 · 구 조문 대비 표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안)]

관 련 법 령 (발췌)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배출부과금) ① ~ ⑦ <생략>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생략>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 한다.

③ ~ ④ <생략>